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2년 10월 21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2년 10월 26일

라. 상정일자: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2. 10. 3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적용 대상자를 조정하여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명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변경
- 조례의 적용 대상자를 “1인 가구”에서 “가구”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사업에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추가 (안 제8조)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 (안 제9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종란)

○ 본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안을 명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서울시에서는 2021년 9월 30일 고독사 정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개념을 기존 1인 가구에서 고립된 전체가구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조례 적용 대상자를 “1인 가구”에서 “가구”로 변경하고 이를 조례의 제명과 관련된 조문에 반영하였고,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고독사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변경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에 반찬제공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을 추가함.
- 또한,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최근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의 대상을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가구 전체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
----------	----

발의연월일 : 2022년 10월

발의자 : 유승용·이순우·김지연·
전승관 의원(4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주요 대상자를 조정하여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명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변경
- 나. 조례의 주요 대상자를 “1인 가구”에서 “가구”로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 및 제3조 및 제4조 및 제7조)

- 다. 제8조(지원사업) 제6항, 제9조(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
-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본문 정비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2.10.14. ~ 10.19.):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을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독사”란”을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로, “맞고”를 “맞고,”로, “경과된”을 “흐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고독사 위험자”란”을 ““고독사위험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제3조 중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

견하고 위협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로 한다.

제4조 중 “1인 가구”를 “가구(거소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추진계획의 수립)”을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계획”을 “예방 및 지원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예방”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위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고독사”를 각각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예방”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외·단절된 1인가구”를 “사회적 고립가구”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1인가구 중 경제적”을 “경제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ICT(정보통신기술)”를 “정보통신기술(ICT)”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응급호출버튼”을 “응급호출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예방사업”을 “예방사업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u></p> <p>2. <u>“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u></p> <p>3. <u>“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u> ----- --.</p> <p>제2조(정의)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2. <u>“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 맞고, --- 흐른 ---.</u></p> <p>3. <u>“고독사위험자”란 -----</u> ----- -----</p>

을 말한다.

4.“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4. -----

----- 가구-----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

제4조(적용범위) -----

----- 가구(거소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되어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

----- 예방 및 지원 계획-----.

1. -----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생략)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

2. 고독사위험자 -----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
5. (현행과 같음)
6. -----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제6조(실태조사) ① ----- 사회적 고립가구-----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

1. 경제적-----
2. ----- 가구 -----

이 취약한 사람

3.·4. (생략)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략)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ICT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3. (생략)
4.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생략)

<신설>

6. ~ 8.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3.·4.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사업)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정보통신기술(ICT) -----

3. (현행과 같음)
4. -----
응급호출장치 -----

5. (현행과 같음)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 필요한 -----

--.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p><u>제9조</u>(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u>예방사업</u>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u>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u>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0조</u> (생략)</p>	<p><u>제10조</u>(협력체계 구축) ----- ----- <u>예방사업 및 사회적 고립</u> <u>가구 안전망 확충</u>----- ----- -----.</p>
	<p><u>제11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p>